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11. 2 선고 2021가단172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‘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(이하 ’이 사건 아파트‘라 한다)’에 관하여 2020.

1. 2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2. 6. 접수 제12844호로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는 피고의 채권자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언니인 C와 통정하여 이

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,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, 등기명의자 아닌 자는 그러한 소의 피고적격이 없는바, 피고가 위 등기의 명의자가 아님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서희경